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6.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 06.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 동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 추가 및 신설로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내용 자구 삭제(안 제1조, 제5조)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관련 자구 수정(안 제3조)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삭제, 신설, 일부요율 전국통일 및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1)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 개정

<증 명>

-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삭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신설 ⇒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 300원 ⇒ 800원 전국통일
-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 : 300원 ⇒ 800원 전국통일
- 회계에 관한증명 :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삭제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 300원 ⇒ 800원 전국통일
-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 300원 ⇒ 800원 전국통일
-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 삭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현실화 : 500원 ⇒ 20,000원
- 내수면 어업관계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신설 : 1,000원
- 「공연법」 등에 의한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 신설 : 20,000원
- 「의료법」 등에 의한 보건소 관련 수수료 신설
의료기관 개설 신고 : 20,000원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 20,000원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 2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 20,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등록,지정,확인 등으로 타 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수수료 현실화 : 300원 ⇒ 500원

3.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1408(2006.7.3)호 및 도재정과-12563(2006.7.4)호로 표준안 시달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1606(2005.10.12)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처분 요구 사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 「내수면 어업법」 제23조
-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2, 제22조의3, 제26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입찰참가신청”을 삭제 한다

제3조단서중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으로 하고, “경상북도”를 “구미시”로 하며,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제5조중 “및 입찰참가 신청서”를 삭제 한다

제6조제2항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증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통	300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3. 정부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관계제외
· 대장문서	1통	300	
· 토지도면	1통	300	
· 건물도면	1통	300	
(2) 공부열람			지적관계제외
· 기본료	시간당	100	
· 초과료	10분당	100	
(3) 인.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4.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2)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3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5)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6)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1,000 갈라도면첨부 15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800	
(2)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6.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 증명	1건	300		
(2) 납품 또는 공사 실적 증명	1건	300		
(3) (삭제)				
7.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건	3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호1년도당	800		
8. 지가 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 1년도당	800		
(2) (삭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 계속300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3)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건	법인 20,000 중개사5,000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1건	1,000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20,000		
2. 농수산 관계				
(1) 내수면 어업 관계				
(가) 어업면허 신청	1건	1,600		
(나) 어업허가 신청	1건	1,000		
(다)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2)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2)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3) 용제 판매소 등록	1건	10,000		

구분	기준	요율	비고
4. 건설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3)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4)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5)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8)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1건	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10)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1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1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5.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	1건	50,000	
(2)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5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	1건	20,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1건	10,0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6. 보건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20,000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1건	20,000	
(6)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	20,000	
(8) 치과기공소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 인 등으로 타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 정에 정하는것(법령상 의무 사항제외)	1건	5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신 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신 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자치부교부 세팀-1606(2005. 10.12)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행정자치부시정 통보사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관 련내용 삭제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u>광고물등 설 치허가</u>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 표3】 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u>광고물등의 허 가 또는 신고</u> 수수료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 표2】 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구미시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에 의거 개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및 <u>입찰참 가 신청서</u> 등에 첨부하게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 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 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미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 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 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감 사원통보에 의 거 “입찰참가 신청서”관련내 용 삭제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 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 료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신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제6조----- -----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제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인명·감정·행위·제(수)규정 증법령제19조수정
구분	기준	요액	참고	구분	기준	요액	참고	
<증명> <u>1.인감에 관한 증명</u> (1) <u>인감증명</u> (2) <u>인감의개인신고</u> 2. (1)(생략) (2)(생략) 3.(생략) 4.(1)~(7)(생략) (신설)	1통 1통	300 300		<증명> 1. (삭제) (1)(삭제) (2)(삭제) 2.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1)~(7) (현행과같음) (8) <u>토지이용계획확인서</u> (<u>킬라발급또는도면 첨부</u>)		-		전국통일 전국통일
5. <u>지방세에 관한증명</u> (1) <u>납세완납증명 또는 매 배 과세 증명</u> (2) <u>세목별과세증명</u>	1건 1건	300 300		5. <u>지방세에 관한증명</u> (1) <u>지방세 납세증명서</u> (2) <u>지방세 세목별과세 납 세)증명서</u>	1통 1통	800 800		
6. 회계에 관한 증명 (1)~ (2)(생략) (3) <u>입찰참가신청</u>	1건	10,000		6. 회계에 관한 증명 (1)~(2)(현행과같음) (3)(삭제)	(삭제)	(삭제)		전국통일 전국통일
7. 주택에 관한 증명 (1)(생략) (2) <u>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u>	1호 1년도당	300		7. 주택에 관한 증명 (1)(현행과같음) (2) <u>개별(공동)주택가격 확 인서 발급</u>	1호 1년도당	800		
8. 자가관련 확인원 (1) <u>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u> (2) <u>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 공시</u>	1필지 년도당 "	300 300		8. 자가관련 확인원 (1) <u>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u> (2) <u>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u>	1필지 1년도당 <삭제>	800 <삭제>		전국통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구분	기준	요액	참고	구분	기준	요액	참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생략) (1) ~ (4)(생략) (5)(가)~(나)(생략) (다)분사무소설치신고 2.(1)(생략) (가)~(다)(생략) (신설) (2)(생략) 5.(1)~(6)(생략) (신설) (신설)	1건	5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현행과같음) (1) ~ (4)(현행과같음) (5)(가)~(나)(현행과같음) (다)분사무소설치신고 2.(1)(현행과같음) (가)~(다)현행과 같음 (라)유해어업의사용허가 신청 (2)현행과 같음 5.(1)~(6)(현행과같음) (7)영화상영관등록 6.보건소 관련 (1)의료기관개설신고 (2)의료기관신고사항변경 신고 (3)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 (4)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5)안경업소개설등록신고 (6)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7)치과기공소인정신청 (8)치과기공소양도.양수 신고	1건	20,000		현실화
					1건	1,000		
					1건	20,000		공연법
					1건	20,000		
					1건	10,000		
					1건	20,000		의료법 등 개정 에 따른 신설
					1건	10,000		
					1건	20,000		
					1건	10,000		
					1건	10,000		
6.(생략)	1건	300		7.(현행과 같음)	1건	500		현실화

참 고 법 령

□ 인감 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감증명발급 : 통당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600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관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9567호, 2006.6.29.공포)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기준 (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기준 (제2조 관련)

종 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 (A)	조례에 규정될 수수료 금액		비 고
		최저 (A-A*10%)	최고 (A+A*1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1필지당 720원	1필지당 88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1주택당 720원	1주택당 88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1주택당 720원	1주택당 88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720원	1건당 88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1필지당 900원	1필지당 1,100원	칼라발급 의경우와 도면첨부 의 경 우 구분가능
	※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	1필지당 1,350원	1필지당 1,650원	

※ 이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발급형태나 단위 등이 달라지는 경우(예,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의 경우 연도 추가시 수수료 등)에는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징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3.23 대통령령 제19405호]

[별표 4] <개정 2002.5.27> 수수료(제19조관련)

1. 영화업의 신고 법 제4조제1항 및 20,000원 제39조제1항제1호
2. 영화업의 변경신고 법 제4조제1항 및 10,000원 제39조제1항제1호
3.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 법제4조제2항 및 5,000원 제39조제1항제2호
4.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법 제5조제1항 및 10,000원 제39조제1항제3호
5.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 법 제26조 및 제39조 20,000원의 범위 안에서 등록신청 조제1항제4호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3,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의2의 규정은 부속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0.21>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3. 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②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타시 비교표

(단위: 원)

구	분	기준	당초	개정안	포항	김천	경산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인감의 개인 신고	1통	2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통	300			300	300	300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증명	1통	500			500	500	1,000
3. 정부또는 자치단체의처분 또는 구역내의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1통	300			300	400	400
· 토지도면	1통	300			300	500	500
· 건물도면	1통	300			300	500	300
(2) 공부열람							
· 기본료	시간당	100			100	200	200
· 초과료	10분당	100			100	100	100
(3)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100	100	100
4.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400	400	400
(2)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300	300	3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건	300			300	300	3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300	300	300
(5)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300	300	300
(6)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300	300	300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에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건	300			300	300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1,000 칼라도면 첨부1,500	1,000 칼라도면 첨부1,500	1,000 칼라도면 첨부1,500	1,000 칼라도면 첨부1,20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300	800		800	800	800
(2)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300	800		800	800	800
6. 회계에 관한증명							
(1)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300	300	
(2) 납품 또는 공사 실적 증명	1건	300			300	300	300
(3) 입찰 참가신청	1건	10,000	삭제	삭제	삭제	개정중	삭제

구	분	기준	당초	개정안	포항	김천	경산
7.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300	300	3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호1년 도당	300	800		800	800	800
8. 지가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1 년도당	300	800		800	800	800
(2)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	1년도당	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 계속300			신규500 계속300	1,000	
(2)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50	50	100
(3)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600	600	600
(4)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500	500	500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건	법 인20,000 중개사5,000			법 인20,000 중개사5,000	20,000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1건	1,000			3,000	2,000	2,000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500	20,000		20,000	10,000	20,000
2. 농수산 관계							
(1) 내수면 어업 관계							
(가) 어업면허 신청	1건	1,600			1,000		
(나) 어업허가 신청	1건	1,000			1,500		
(다)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			2,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1,500		
(2) 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			2,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30,000
(2)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20,000
(3) 용제 판매소 등록	1건	10,000					10,000
4. 건설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 타)점용허가	1건	점용료 의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500	500

구	분	기준	당초	개정안	포항	김천	경산
(3)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허가사공사비의1/1000		허가사공사비의1/1000		
(4)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1/1000		점용료의1/1000		
(5)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1/1000		점용료의1/1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1/1000		점용료의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500	500	
(8)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1,000		1,000	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500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900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1,300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2,100	2,100	
(10)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500	500	500
(1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500	500	500
(12)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 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500	500	500
(1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500	500	500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500		500	500	500
5.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	1건	50,000		40,000		
(2)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50,000		2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등록	1건	20,000		20,000	20,000	20,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1건	10,000			20,000	20,000
(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건	5,000		5,000	5,000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구	분	기준	당초	개정안	포항	김천	경산
6. 보건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20,000	20,000	30,000	22,000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10,000	10,000	15,000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	10,000		22,000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10,000		15,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1건			20,000	20,000	20,000	20,000
(6)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10,000	10,000	15,000
(7)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			20,000	20,000		20,000
(8) 치과기공소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0,000		15,000
7.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1건	300		500	500	300	300